

#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관련법규에 의거 당사는 해당사항 없으나 참고 및 정책 수립 자료로 사용

|         |              |
|---------|--------------|
| 기업명     | (주)엣데이터      |
| 문서번호    | 220103_esg06 |
| 제 · 개정일 | 2022.01.03   |
| 담당부서    | 경영지원         |
| 담당자     | 경영지원팀장       |

**<제 · 개정 이력>**

[illegible]

## <목 차>

| 목차명                             | 제 · 개정일    | 페이지 |
|---------------------------------|------------|-----|
| I. <a href="#">안전보건경영 방침</a>    | 2022.01.03 | 1   |
| II. <a href="#">안전보건관리 규정</a>   | 2022.01.03 | 2   |
| III. <a href="#">안전보건경영 조직도</a> | 2022.01.03 | 20  |
| IV. <a href="#">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a> | 2022.01.03 | 23  |
| V. <a href="#">안전보건 교육</a>      | 2022.01.03 | 26  |

|         |              |            |
|---------|--------------|------------|
| (주)엡데이터 | I. 안전보건경영 방침 | 제 · 개정일    |
|         |              | 2022.05.01 |

## □ 안전보건경영 목적

(주)엡데이터는 안전보건 경영을 지속 가능 경영의 중점으로 인식하여,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

## □ 안전보건경영 방침

- ▷ 임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환경 및 근무환경을 조성한다.
- ▷ 안전보건 관련 법규 및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철저히 준수한다.
- ▷ 안전보건 경영 체계를 구축하여 사전에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 및 제거함으로써 기업의 모든 활동 영역에서 안전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 안전보건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임직원의 안전 보건 인식을 제고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문화를 형성한다.
- ▷ 임직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활동을 수립 및 시행한다.
- ▷ 안전 사고 또는 재해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체계를 마련한다.

|         |               |            |
|---------|---------------|------------|
| (주)엣데이터 | II. 안전보건관리 규정 | 제 · 개정일    |
|         |               | 2022.05.01 |

## 제1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이하“법”이라한다) 제20조에 따라 (주)엣데이터의 안전 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및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①이 규정은 회사의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 ②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 및 규칙등 관련 법규를 따른다.

### 제3조(용어의정의)

- 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자를 말한다.

5.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자를 말한다.

6. 유해·위험요인: 유해 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으로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밖에 업무에 기인되는 등 근로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모든것을 말한다.

7. 위험성 평가: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 위험 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제4조(안전보건경영방침)

①회사는 안전 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해야하며, 이 방침에 안전 보건과 관련된 목표, 성과 개선의 의지를 분명히 제시하고 모든 구성원에게 공표되어야 한다.

②안전 보건 방침은 간결하게 문서화하고 최고경영자의서명과 시행일을 표기하여 기업내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안전 보건 정책이 사회적 흐름이나 기업에 적합한지 여부등을 주기적으로 검토·수정하여야 한다.

## 제5조(재해예방의무)

이 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안전 보건 업무수행을 위해 다음의 재해 예방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 1. 회사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련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작업환경 및 근로환경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식별 및 조치하여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 안전 보건에 관한 규정 및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근로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관련법 및 이 규정에서 정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산업 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장 안전 보건 관리 조직과 직무

###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를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로 선임한다.

②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산업 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근로자의 건강 진단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7. 안전·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그밖에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 제7조(관리감독자)

업무상 그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관리 감독자로 임명하며, 그 구체적인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업장 내 관리 감독자가 지휘·감독하는 작업(이하이조에서“해당작업”이라한다.)과 관련된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 장치의 점검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 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위험성 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개선 조치의 시행
5. 그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 **제8조(안전관리자)**

- ① 회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 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둘 수 있다.
- ②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안전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3. 산업 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도·조언 (안전분야로 한정한다)
  5. 그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산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 ③ 회사는 보건 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 ④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안전 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14조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자격)에 따른다.
- ⑤ 회사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조(보건관리자)**

①회사는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 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을 하기 위하여 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②보건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건강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작업 관리
2.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保護具) 구입 시 적격품 선정
3. 물질 안전 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
4. 근로자의 건강관리, 보건 교육 및 건강 증진지도
5. 직업성 질환 발생의 원인 조사 및 대책 수립
6. 사업장 순회 점검 지도 및 조치의 건의
7. 업무 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8. 그밖에 작업 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③ 회사는 보건관리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회사가 선임 할 수 있는 보건 관리자의 자격은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령 제18조 관련 별표6에 따른다.

⑤ 회사는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안전 관리 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제10조 (산업보건의)**

① 회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밖의 보건 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 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②산업 보건직의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하며, 각호에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1. 건강진단 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따른 작업 배치, 작업 전환 또는 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 보호 조치
2. 근로자의 건강 장애의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
3. 그 밖에 근로자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산업 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③ 회사가 선임할 수 있는 산업 보건직의의 자격은 「의료법」에따른 의사로서 직업 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 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임하거나 위촉한다.

### 제3장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 제11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회사는 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제13조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산업 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함)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며 그 구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 대표
2.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임직원
3. 회사의 대표자
4. 회사의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

#### 제12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의 운영)

① 간사는 사용자측, 근로자 측 각 1인으로 하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3개월 마다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 제13조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산업재해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 보건 관리 규정 및 각종 안전 보건 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측정등 작업 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 진단 등 건강 관리에 관한 사항
6. 중대 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와 그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보건조치에 관한 사항

## 제4장 안전·보건 교육

※ 안전보건교육훈련의 계획 및 실행과 관련하여 V. 안전보건 교육 (p26) 참고

### 제14조 (안전 보건 교육 계획 수립)

- ① 회사는 안전 보건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담당자들을 포함한 실행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 ② 안전·보건 교육의 실행 계획 수립 시 소방교육(또는 가스·전기·교통관련법)을 포함한다.
- ③ 안전·보건 교육은 회사 내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 보건 교육  
(이하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이라 함)과 관리 책임자등에 대하여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직무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④ 안전 보건 교육은 교육 대상과 교육 시기에 따라 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의교육,  
물질 안전 보건 교육, 특별 안전 보건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⑤ 관리 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은 직무 교육으로써 신규 교육과 보수 교육으로 구분한다.
- ⑥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설문·시험등으로 교육 성과를 측정하여 다음 연도의 교육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 제15조 (신규 채용자 교육)

- ① 회사에 신규로 채용된 직원에 대하여는 담당 업무 종사전에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안전 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 시간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신규 채용자에 대한 교육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산업 안전 보건 법령에 관한 사항

2. 사고 및 재해 발생 경위, 사고 유형 및 예방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설비 기계 및 기구의 안전 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
4. 기계 기구의 위험성과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5. 기타 안전 보건에 관한 사항

#### **제16조 (정기교육)**

① 안전 보건 정기 교육은 소관부서에서 모든 소속 직원들에게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매분기 산업 안전 보건법 시행 규칙[별표4] 안전 보건 교육 과정별 교육시간에 따라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기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 안전 보건 법령 및 안전 보건 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
2.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3. 작업 공정의 유해 위험에 관한 사항
4. 작업 환경 개선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5. 표준 안전 작업 방법에 관한 사항
6. 안전 보건 점검 및 보호구 취급과 사용에 관한 사항
7. 안전 사고 사례 및 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8. 무재해 추진 실적 및 기법에 관한 사항
9. 제품 및 원재료의 취급 방법에 관한 사항
10. 방호 조치 및 방호 설비의 사용에 관한 사항

11. 안전 표지 및 주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현장 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특별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음

**제18조(물질안전보건교육)**

해당없음

**제19조(직무교육)** 다음 각호의 관리 책임자는 고용 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 보건에 관한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 교육 및 보수 교육 시간과 시기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제20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강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 감독자, 안전 관리자, 보건 관리자 및 산업 보건의 또는 산업 안전 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



2. 관리 감독자에 대한 안전 보건 교육: 회사에서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안전 보건 교육을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 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 제20조(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 일지 (또는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 일시 및 장소
2. 교육 담당자
3. 교육 과정 및 내용
4. 교육 대상자 및 참석 인원
5. 그 밖의 교육 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제5장 안전 보건 관리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점검을 위해서는 IV. 안전보건관리체계 점검(p23) 참고

### 제21조 (안전 보건 경영 계획 수립 및 실행)

- ① 회사는 안전 보건 관리 대상 사업 및 시설의 안전 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 보건 경영 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는 안전 경영 책임 계획의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제22조 (안전보건경영보고서작성및공시)

회사는 당해 연도 안전 보건 경영 계획의 주요 내용 및 전년도 안전 보건 경영 계획에 대한 점검 내용, 전년도 재해 현황등을 포함하여 안전 보건 경영 보고서를 작성 및 공시하여야 한다.

※ 제23조에서 제25조는 업종 및 기업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제23조(기계·기구및설비의방호조치)

해당없음

### 제24조(전기설비안전)

해당없음

### 제25조(안전검사)

해당없음

#### 제26조(표준 작업 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 ① 작업부서에서는 공정별·작업별·설비별로 표준 작업 안전 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 ② 근로자는 표준 작업 안전 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27조(위험물질의보관및사용)

해당없음

#### 제28조(작업중지등)

- ① 산업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때 또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을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임직원을 작업 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한 후 작업을 다시 시작하여야 한다.
- ② 임직원이 산업 재해가 발생 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안전 보건 담당 부서 또는 산업 재해 담당 부서 (이하“담당부서”라한다)에 보고하고, 담당 부서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산업 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임직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9조(비상조치계획)

회사는 위험성 평가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 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제30조(피난 및 대응 훈련)

회사는 비상 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대응 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 및 보완하여야 한다.

#### 제31조(비상 연락 시스템 구축)

회사는 비상 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 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 제32조(질병자근로금지등)

①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질병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자.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2. 정신분열증, 마비성 치매 기타 정신 질환에 걸린자
3.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이 있는자로서 근로에 의하여 병세가 악화 될 우려가 있는자
4. 제1호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건강 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33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 안전 보건 자료 대상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 제34조(근골격계질환예방)

- ① 근골격계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질환이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임직원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근골격계 질환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하며, 작업 시작 전 건강 제도 및 작업중 적절한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스스로 질환의 예방에 힘써야 한다.
- ③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 된 경우 해당 임직원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을 받도록 하며, 요양을 마치고 복귀한 경우 해당 임직원과의 협의하에 가급적 다른 업무로 전환하도록 하며, 전환이 어려울 경우 자세 및 작업 환경의 개선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35조(유해물질취급및관리)

해당없음

### 제36조(안전보건보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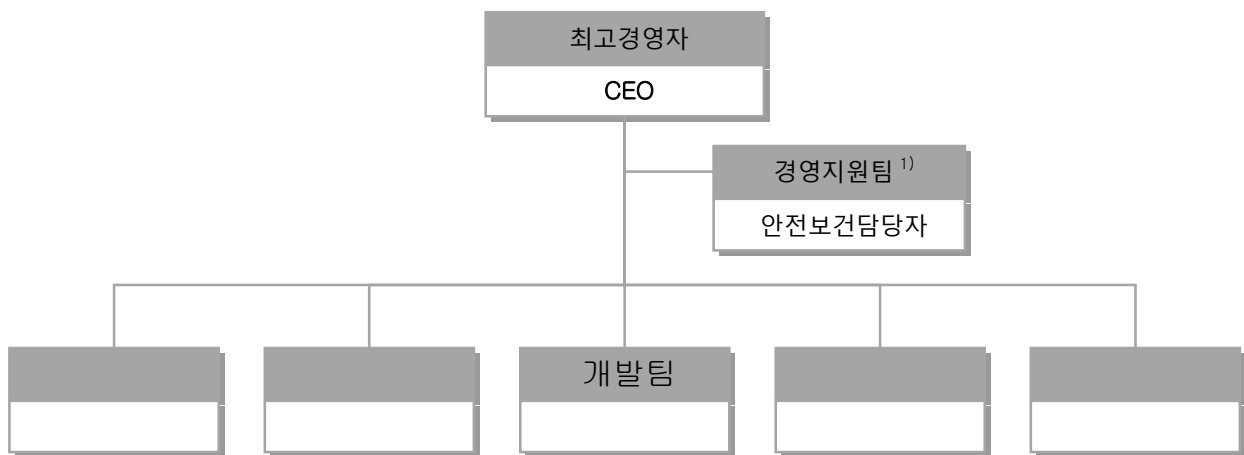
해당없음

|         |                 |            |
|---------|-----------------|------------|
| (주)엣데이터 | III. 안전보건경영 조직도 | 제 · 개정일    |
|         |                 | 2022.05.01 |

※ 기업의 규모 또는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안전보건경영 조직의 구성 수준을 결정함.

## □ 안전보건담당자지정(예시)

### ▷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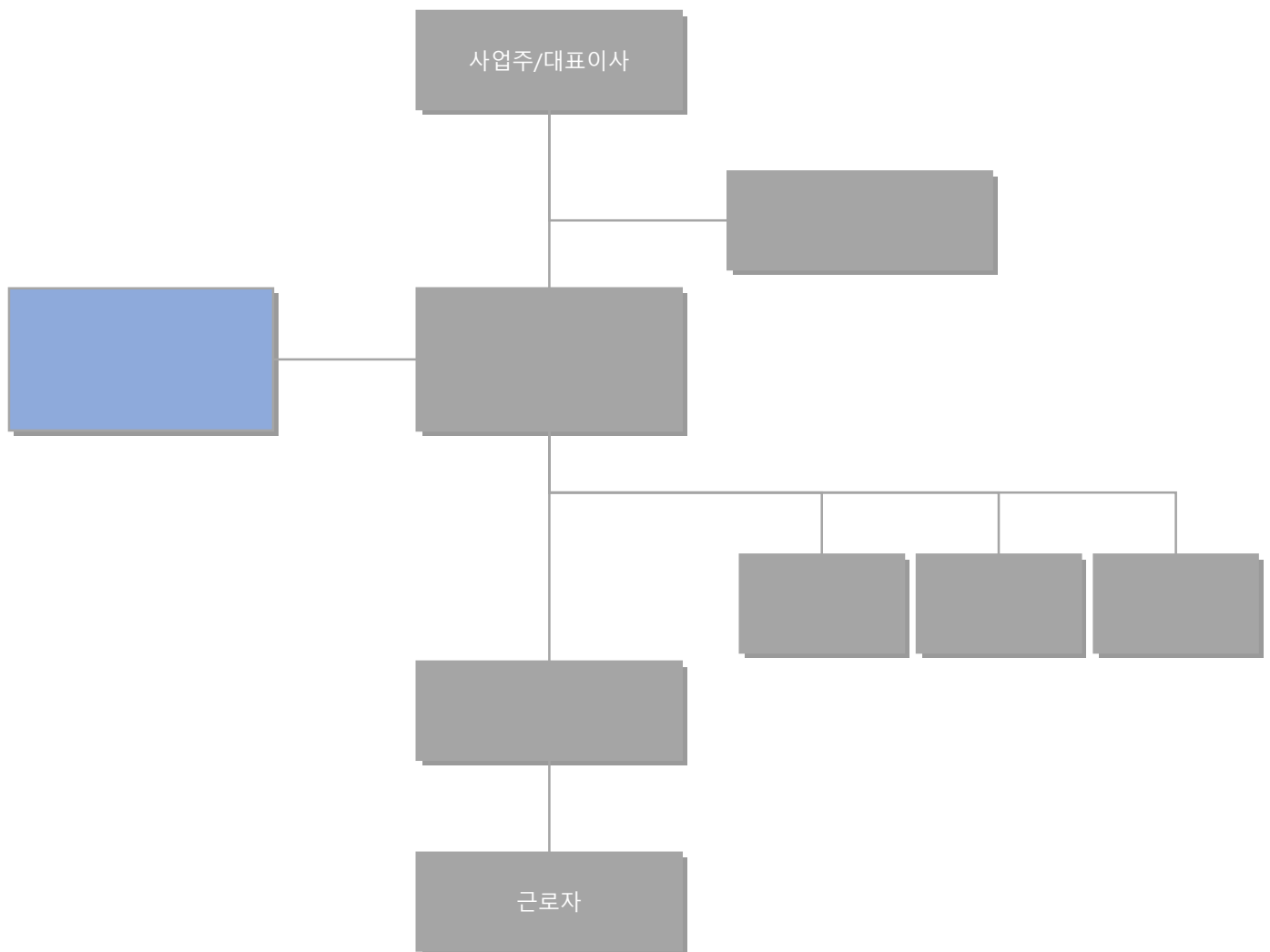


| 부서      | 안전보건 업무                                                                                                                                                                             |
|---------|-------------------------------------------------------------------------------------------------------------------------------------------------------------------------------------|
| 경영지원팀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보건관리규정 수립 및 개정</li> <li>· 안전보건활동 계획의 수립 및 실행</li> <li>· 안전보건활동 결과 보고 및 후속조치</li> <li>· 위험성 평가 및 사전 예방 조치</li> <li>· 안전보건 교육 등</li> </ul> |

### ▷ 담당업무

## □ 안전보건전문인력및최고안전관리책임자지정(예시)

### ▷ 조직도



(관계법령: 산업안전보건법)

|         |                |            |
|---------|----------------|------------|
| (주)엠테이터 | IV. 안전보건관리체계점검 | 제 · 개정일    |
|         |                | 2022.05.01 |

## □ 안전보건관리체계점검기준

안전보건관리체계의영역별주요사항의만족여부를점검함으로써관리체계의완전성을점검함.

| 영역               | 핵심 평가요소                                                                                                                                                                                                           | 평가척도                            |
|------------------|-------------------------------------------------------------------------------------------------------------------------------------------------------------------------------------------------------------------|---------------------------------|
| 경영자리더십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안전보건에대한의지를밝히고, 목표를정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안전보건에필요한자원(인력·시설·장비)을적절히배정하고있는가?</li> <li>기업은구성원의권한과책임을정하고, 참여를독려하고있는가?</li> </ul>                                                | Y/N<br>Y/N<br>Y/N               |
| 근로자의참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안전보건관리전반에관한정보를공개하고있는가?</li> <li>기업은모든구성원이참여할수있는절차를마련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자유롭게의견을제시할수있는문화를조성하고있는가?</li> </ul>                                                              | Y/N<br>Y/N<br>Y/N               |
| 위험요인파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위험요인에따른정보를수집하고정리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산업재해및아차사고를조사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위험기계·기구·설비등을파악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유해인자를파악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위험장소및작업형태별위험요인을파악하고있는가?</li> </ul>         | Y/N<br>Y/N<br>Y/N<br>Y/N<br>Y/N |
| 위험요인제거·대체<br>및통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위험요인별위험성을평가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위험요인별제거·대체및통제방안을검토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임직원및협력사근로자에게위험예방을위한보호구를제공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종합적인대책을수립하고이행하고있는가?</li> <li>기업은교육훈련을실시하고있는가?</li> </ul> | Y/NY/NY/<br>N<br><br>Y/N<br>Y/N |



| 영역              | 핵심 평가요소                                                                                                                                               | 평가척도              |
|-----------------|-------------------------------------------------------------------------------------------------------------------------------------------------------|-------------------|
| 비상조치계획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위험요인을바탕으로'시나리오'를작성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재해발생시나리오'별조치계획을수립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조치계획에따라주기적으로훈련하고있는가?</li> </ul>   | Y/N<br>Y/N<br>Y/N |
| 도급·용역·위탁시안전보건확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산업재해예방능력을갖춘사업주를선정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운영시사업장내모든구성원이보호받을수있도록하고있는가?</li> </ul>                       | Y/NY<br>/N        |
| 평가및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은안전보건목표를설정하고관리하고있는가?</li> <li>기업은'안전보건관리체계'가제대로운영되는지점검하고있는가?</li> <li>기업은발굴된문제점을주기적으로검토하고개선하고있는가?</li> </ul> | Y/N<br>Y/N<br>Y/N |

※ 출처:고용노동부(2021), 안전보건관리체계가이드북,p13

□ 점검결과및조치양식(예시)

| 점검일자           | 영역         | 점검결과                         | 조치사항                       |
|----------------|------------|------------------------------|----------------------------|
| 2022.05<br>.01 | 위험요인<br>파악 | · 신규설비에대한위험요인이파악되지<br>않음     | · 신규설비에대한위험요인을작업<br>형태별로파악 |
| 2022.05<br>.01 | 평가 및<br>개선 | · 안전보건경영방침과안전보건목표가<br>일치하지않음 | · 안전보건목표와목표별KPI 설정         |

## □ 산업재해현황관리

| 구분                      | Y-3년 | Y-2년 | Y-1년<br>(최근 결산연도) |
|-------------------------|------|------|-------------------|
| 산업재해자 수 <sup>1)</sup>   |      |      |                   |
| 중대산업재해자 수 <sup>2)</sup> |      |      |                   |
| 중대시민재해자 수 <sup>3)</sup> |      |      |                   |
| 상시근로자 수 <sup>4)</sup>   |      |      |                   |
| 산업재해율 <sup>5)</sup>     |      |      |                   |

### ▷ 재해자수및산업재해율관리

| 구분                   | 관련 용어 설명                                                                                                                                 |
|----------------------|------------------------------------------------------------------------------------------------------------------------------------------|
| 산업재해 <sup>1)</sup>   | 업무에관계되는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의하거나작업또는그밖의업무로인하여사망또는부상하거나질병에걸리는것을                                                                           |
| 중대산업재해 <sup>2)</sup> |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중대시민재해 <sup>3)</sup> | 특정원료또는제조물, 공중이용시설또는공중교통수단의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결함을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또는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 상시근로자수 <sup>4)</sup> | 상시근로자를비롯하여임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파견근로자등모든형태의근로자를포함함.                                                                                            |
| 산업재해율 <sup>5)</sup>  | 1년간발생한재해자수와연평균근로자수를통해산업재해율을산정<br>$\text{산업재해율}(\%) = \frac{\text{재해자수}}{\text{상시근로자수}} \times 100$                                       |

※ 용어설명

|        |            |            |
|--------|------------|------------|
| (주)엠펙터 | V. 안전보건 교육 | 제 · 개정일    |
|        |            | 2022.05.01 |

## □ 안전보건교육훈련계획

### ▷ 교육훈련목적

안전보건교육은경험부족,인지부족으로인해발생할수있는잠재적인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하여임직원의 안전과보건을유지및증진시키고자하는목적에서실시한다.교육훈련은그목적에따라대상자와교육방법을구분하여실시한다.

### ▷ 교육훈련종류(예시)

| 교육 구분     | 교육 대상자    | 법정 교육 시간 |
|-----------|-----------|----------|
| 정기교육      | 전 임직원     | 완료       |
| 신규입사자교육   | 신규입사자 전원  | 완료       |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 해당작업담당자   |          |
| 특별교육      | 해당작업담당자   |          |
|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

## □ 교육훈련연간시행계획(예시)

| 교육 구분           |     | 교육 내용                                                                                                                 | 교육방법        | 교육 일자    | 교육시간  | 교육대상      |
|-----------------|-----|-----------------------------------------------------------------------------------------------------------------------|-------------|----------|-------|-----------|
| 정기<br>교육        | 1월  | 동절기재해예방대책                                                                                                             | 강의식         | 22.01.01 | 2시간   | 전직원       |
|                 | 2월  | 화학물질의위험성및유해성에대한이해                                                                                                     | 시청각         | -        | 2시간   | 전직원       |
|                 | 3월  | 보호구착용및관리요령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4월  | 직무스트레스예방관리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5월  | 감전재해예방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6월  | 근골격계질환의원인및대책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7월  | 하절기안전사고예방대책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8월  | 화기작업안전및밀폐공간작업안전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9월  | 기계의위험성및안전대책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10월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에관한사항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11월 | 차량계운반기계의위험및예방대책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 12월 | 건강증진및뇌심혈관질환예방                                                                                                         | 강의식         | -        | 2시간   | 전직원       |
| 채용 시 교육         |     | · 산업안전보건법령에관한사항                                                                                                       | 강의식         | 채용 후     | 8시간   | 입사자       |
| 작업내용 변경<br>시 교육 |     | · 당해설비. 기계및기구의작업안전점검에관한사항<br>· 기계. 기구의위험성과안전작업방법에관한사항<br>· 근로자건강증진및산업간호에관한사항<br>· 물질안전보건자료에관한사항<br>· 기타안전· 보건관리에필요한사항 | 현장교육        | 작업 배치 전  | 2시간   | 해당<br>작업자 |
| 특별안전교육          |     | 주물및단조작업, 로봇작업, 맨홀작업, 밀폐공간작업,<br>허가및관리대상물질의제조또는취급작업등 40개의 작업<br>(산안법시행규칙 [별표5])                                        | 강의식<br>시청각외 | 작업 배치 전  | 16시간  | 해당<br>작업자 |
| 직무교육            |     | 안전보건관리책임자교육                                                                                                           | 외부집체<br>교육  | 외부교육기관   | 6시간이상 | 선임자       |

□ 안전보건교육결과보고서양식

|                                                                                                               |                                                                                                                  |        |      |    |            |
|---------------------------------------------------------------------------------------------------------------|------------------------------------------------------------------------------------------------------------------|--------|------|----|------------|
| <h1 style="text-align: center;">안전보건교육일지</h1> <p style="text-align: center;">일시 : 20 . . . ( : ~ : )작성자 :</p> |                                                                                                                  | 결<br>재 | 담당   | 부장 | 대표         |
|                                                                                                               |                                                                                                                  |        |      |    |            |
| 교육과정                                                                                                          | 가. 정기교육<br>나. 채용 시의 교육<br>다. 작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br>라. 특별교육<br>마. 기타( )교육<br>※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8] 참조 |        |      |    |            |
| 교육인원                                                                                                          | 구 분                                                                                                              | 계      | 남    | 여  | 교육 미 실시 사유 |
|                                                                                                               | 교육 대상자 수                                                                                                         |        |      |    |            |
|                                                                                                               | 교육 실시자 수                                                                                                         |        |      |    |            |
|                                                                                                               | 교육 미 실시자 수                                                                                                       |        |      |    |            |
| 교육과목                                                                                                          |                                                                                                                  |        |      |    |            |
| 교육내용                                                                                                          |                                                                                                                  |        |      |    |            |
| 교육 강사명<br>및 장소                                                                                                | 직 책                                                                                                              | 성 명    | 교육장소 |    | 비 고        |
| 특이사항                                                                                                          |                                                                                                                  |        |      |    |            |

## 안전보건교육 참석자 명단

| 순번 | 부서명(직책) | 성 명 | 서 명 | 순번 | 부서명(직책) | 성 명 | 서 명 |
|----|---------|-----|-----|----|---------|-----|-----|
| 1  |         |     |     | 16 |         |     |     |
| 2  |         |     |     | 17 |         |     |     |
| 3  |         |     |     | 18 |         |     |     |
| 4  |         |     |     | 19 |         |     |     |
| 5  |         |     |     | 20 |         |     |     |
| 6  |         |     |     | 21 |         |     |     |
| 7  |         |     |     | 22 |         |     |     |
| 8  |         |     |     | 23 |         |     |     |
| 9  |         |     |     | 24 |         |     |     |
| 10 |         |     |     | 25 |         |     |     |
| 11 |         |     |     | 26 |         |     |     |
| 12 |         |     |     | 27 |         |     |     |
| 13 |         |     |     | 28 |         |     |     |
| 14 |         |     |     | 29 |         |     |     |
| 15 |         |     |     | 30 |         |     |     |